

2006년 4월 26일

온타리오 주 인권제도 강화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와 온타리오 주 인권심판소로 이루어진 현재의 인권제도는 온타리오 주가 캐나다 최초의 인권법을 제정한 1962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동법은 직장, 숙박시설, 재화, 용역 및 시설에서의 차별과 괴롭힘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인권제도 현대화에 앞장서는 온타리오 주

맥귄티 정부는, 통과될 경우 40년 묵은 온타리오 주의 인권제도를 현대화시키고 강화시킬 법안을 상정했다. 인권 관련 제소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현대의 인권 문제에 보다 능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 취지다.

온타리오 주에서 인권 개혁은 10년 넘게 열띤 토론과 협의의 주제가 되어 왔다. 지난해 법무부는 수많은 지역사회 및 인권 단체와 협의한 바 있다. 코니시 보고서를 비롯한 수많은 보고서의 권고를 바탕으로 한 개혁안은 온타리오 주의 공공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인권을 증진시킬 것이다.

1992년, 변호사이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권전문가인 메리 코니시가 작성한 코니시 보고서는 온타리오 주 인권법에 의거한 인권 시행 절차를 검토했다. 동보고서는 제소인이 인권심판소에 직접 제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의 일차적 기능은 제도적 차별 문제에 대처하는 한편 교육 및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권제도 개선안은 이런 권고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차별을 타파할 것이다.

-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공공 옹호, 연구, 분석 및 홍보 등의 예방적 조치에 중점을 둔다. 인권위원회는 지역사회 및 단체에 폭넓은 영향을 끼치는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쓴다.
-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OHRC) 내에 반인종차별 사무국과 장애인권리 사무국을 신설한다.
- 온타리오 주 인권심판소에 직접 제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개방적이고 신속한 소원 해결 절차를 시행한다. 인권심판소는 한층 더 제고된 법적 권한을 부여받아, 접수된 사건들을 효율적 및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다양한 분쟁 해결 대안을 제공하는 절차를 독립적으로 정하게 된다.

- 인권법률지원센터(Human Rights Legal Support Centre)를 신설한다.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의 현재 역할

맥귄티 정부는 2005년 11월 바바라 홀을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 수석판무관에 이명했다.

인권위원회는 독립기관으로서, 법무장관을 통해 공공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인권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소원을 접수 및 처리하는 것이다. 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제소 건수는 연평균 2,500건이다. 인권위원회는 먼저 당사자 쌍방을 면담하고 나서 은밀하게 진상 조사를 실시한 다음, 사건을 온타리오 주 인권심판소 청문회에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절차에는 최고 5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제소인은 아무런 법적 지원도 받지 못한다.

동위원회는 정책 수립, 연구, 중요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침 개발 등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 최근 발간물로는 인종차별, 연령차별, 강제 퇴직, 레스토랑 체인의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 감사 등에 대한 각종 보고서가 있다.

온타리오 주 인권심판소의 현재 역할

맥귄티 정부는 2005년 4월 저명한 인권변호사 마이클 고트하일을 온타리오 주 인권심판소 위원장에 임명했다.

인권심판소는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으로서, 인권법에 의거하여 차별 및 괴롭힘에 대한 소원을 심판한다.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소원만 심사할 수 있으며, 소원을 심사하여 그에 대한 판결을 내릴 책임이 있다. 인권위원회는 연평균 100건의 소원을 인권심판소에 의뢰한다.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 모든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현재 4-5년이 소요된다. 심판 절차는 접수, 조사 배정, 조사, 분쟁 해결 심의, 기각 결정 또는 인권심판소 의뢰, 인권심판소 청문회, 최종 결정 등으로 이루어진다. 인권위원회와 인권심판소의 중복된 절차에 의해 사건 해결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 개선안

법안 상정된 2006년도 인권법 수정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온타리오 주의 제도적 차별을 타파하기 위한 공공교육, 홍보 및 공공 장려, 연구 및 분석 등의 예방적 조치에 중점을 두게 된다.

또한 인권위원회는 스스로를 위하여 인권심판소에 소원을 제기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제도적 문제가 있는 다른 소원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한다.

- 인권위원회 내에 반인종차별 사무국과 장애인권리 사무국이 신설된다.

온타리오 주 인권심판소 개선안

온타리오 주 인권심판소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제소 절차가 시행된다. 새 법안은 인권심판소에 한층 더 제고된 법적 권한을 부여하여, 인권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 및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인권 위반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절차를 독립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인권심판소는 문제를 조사하고, 사실을 수집하고, 중재를 수행할 수 있다. 인권심판소는 당사자 쌍방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증거를 사정한다. 모든 관련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당사자 쌍방에게 일정 시한 내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인권법률지원센터 신설

상정된 법안에는 인권심판소에서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에게 정보, 지원, 조언 및 법적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권법률지원센터 신설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 단계

법무부는 인권위원회, 인권심판소 및 각종 법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절차에 관해 조언을 제공하는 시행자문위원회를 창설한다. 동위원회는 인권위원회, 인권심판소, 지역사회 단체, 법조/노동/기업 협회 등 각계 대표들로 구성된다.

- 30 -

연락처:
Brendan Crawley
법무부
(416) 326-2210

www.attorneygeneral.jus.gov.on.ca

이 문서는 www.attorneygeneral.jus.gov.on.ca에 14 개국어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 전화문의: 416-326-2220 또는 1-800-518-7901

시각장애인은 상기 전화번호로 전화하십시오.
녹음된 문서를 들을 수 있습니다.

TTY: 416-326-4012